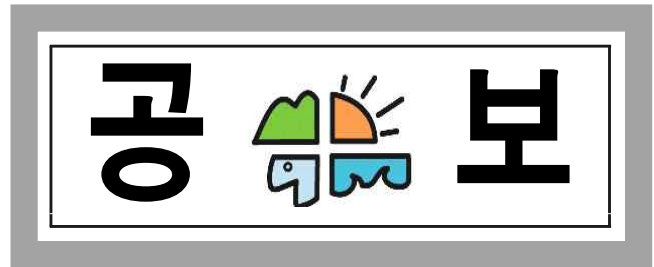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20호 2015년 2월 13일(금)

공 고

- 속초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2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3
- 속초시 징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
-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시금고 협력사업비 공고

금고 협력사업비의 투명한 관리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협력사업비 연도별 납입금액

연 도	금 액	비 고
합계	300,000,000원	납부기한 매년 2월의 마지막 날
2015년	70,000,000원	
2016년	70,000,000원	
2017년	70,000,000원	
2018년	90,000,000원	

2015.02.13.

속 초 시 장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통지가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2. 13.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5. 02. 13. ~ 2015. 02. 27.(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직권말소일 : 2015. 02. 11.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정명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위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10-19번지
		건축물 현황	1층 시멘트벽돌조 식당 62.1㎡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기타 사항

- 가.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디자인과(☎033-639-2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에 대한 시정요청이 있어,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차별조항 수정(안 제5조제1호)
 -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수정
- 나.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기회 보장 문구를 삽입(안 제3조제3항)
 -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701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 민원봉사과

(전화 : 033-639-2727, FAX : 033-639-238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민원봉사과(☎ 033-639-2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의 규정”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적재산 사에 관한 특별법</u> 」 제31조제11항 의 <u>규정에</u>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적재산사 에 관한 특별법</u> 」 제31조제11항--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으 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u>위 촉한다</u>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 과 같음) ③ ----- ----- ----- <u>위촉하되 성별 균 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u> .
1. ~ 4.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정원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지구 행 정동 수만큼의 동장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 업에 대한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당연 <u>해촉</u> 된 것으로 본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 ----- -----. ----- ----- -- <u>위촉 해제</u> -----.
⑤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	제4조(위원의 임기) ----- ----- ----- ----- -----

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해
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
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생
략)

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
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
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③·④ (생략)

제10조(의견청취)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
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

----- . ----- 위촉
해제-----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위촉 해제-----.

1.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2. ~ 4.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대
해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⑤ (생략)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 없으면-----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

-----.

1.·2. (현행과 같음)

3. ----- 따른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

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 등 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 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13일

속 초 시 장

1. 제 명 :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차별 자치법규에 대한 시정요청이 있어, 자치법규 내용을 정비하여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성별 균형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장애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차별조항 수정(안 제5조제1호)
 -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수정
- 나.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기회 보장 문구를 삽입(안 제3조제3항)
 -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수정
- 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수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민원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17-701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초시 민원봉사과

(전화 : 033-639-2727, FAX : 033-639-2385)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 민원봉사과(☎ 033-639-2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의 규정”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지적재산 사에 관한 특별법</u> 」 제30조제8항 의 <u>규정</u> 에 따라 속초시 지적재산 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적재산사 에 관한 특별법</u> 」 제30조제8항--- ----- ----- -----.
제3조(구성) ① · ② (생 략) 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으 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u>위 촉한다</u> .	제3조(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위촉하되 성별 균 형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u> .
1. ~ 4. (생 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정원 및 제4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지구 행 정동 수만큼의 동장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사 업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종료되면 당연 <u>해촉</u> 된 것으로 본다.	1. ~ 4. (현행과 같음) ④ ----- ----- -----. ----- <u>위촉 해제</u> ----- -.
⑤ (생 략)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 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 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에 <u>해</u>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 ----- ----- ----- -----. ----- <u>위촉 해제</u> -----

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 4. (생략)

제10조(의견청취)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위촉 해제-----.

1. 질병, 장기요양 등으로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의견청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

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정책결정과정 및 정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